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제출용]

등기번호	592991	
등록번호	110111-5929918	
상 호	주식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본 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6층(개포동, 서울강남우체국빌딩)	2016.09.13 변경 2016.09.21 등기

광고방법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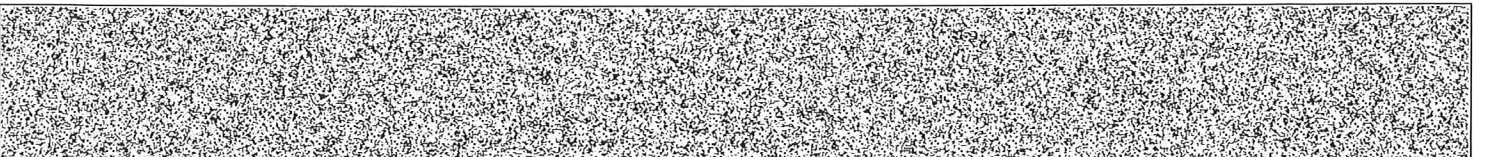
1주의 금액	금 5,000 원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30,000,000 주	
------------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 연월일 등기 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100,000 주	금 500,000,000 원	
보통주식	10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	1,100,000 주	금 5,500,000,000 원	2016.12.31 변경
보통주식	1,100,000 주		2017.01.02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2,879,000 주	금 14,395,000,000 원	2017.08.12 변경
보통주식	1,410,200 주		2017.08.16 등기
에이중우선주식	1,468,800 주		
발행주식의 총수	3,121,200 주	금 15,606,000,000 원	2018.10.24 변경
보통주식	1,527,000 주		2018.10.24 등기
에이중우선주식	1,594,200 주		
발행주식의 총수	3,500,370 주	금 17,501,850,000 원	2022.05.10 변경
보통주식	1,527,000 주		2022.05.10 등기
에이중우선주식	1,973,370 주		

목 적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자산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자산의 투자.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 기타 부투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1.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1. 주택건설사업	
1. 부동산의 개발사업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등기번호	592991
------	--------

- 1. 부동산의 임대차
- 1. 증권의 매매
- 1. 금융기관에의 예치
- 1.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
- 1.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관리.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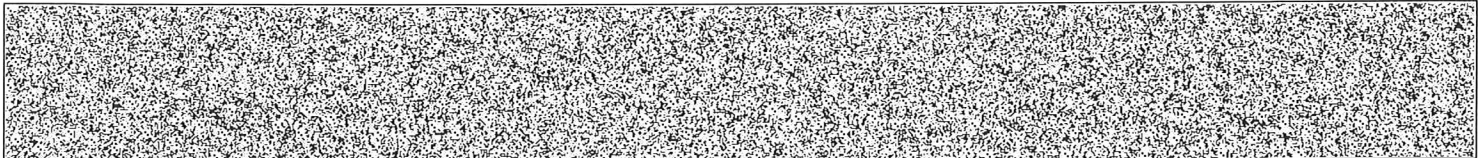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이정대 601110-*****							
2018년	12월	28일	중임	2019년	01월	03일	등기
2021년	12월	28일	중임	2021년	12월	28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장은재 841014-*****							
2018년	12월	28일	중임	2019년	01월	03일	등기
2021년	03월	30일	사임	2021년	04월	06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이수민 921006-*****							
2018년	12월	28일	중임	2019년	01월	03일	등기
2021년	03월	30일	사임	2021년	04월	06일	등기
감사 배성봉 690117-*****							
2018년	03월	30일	중임	2018년	04월	05일	등기
2021년	03월	30일	중임	2021년	04월	06일	등기
대표이사 이정대 6011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터산14길 24-16(성산동)							
대표이사 이정대 60111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곡로 1, 301동902호(세류동, 엘에어치수원센트럴타운3단지)							
2017년	08월	30일	주소변경	2018년	01월	19일	등기
2018년	12월	28일	중임	2019년	01월	03일	등기
2021년	12월	28일	중임	2021년	12월	28일	등기
대표이사 이정대 601110-***** 대구광역시 남구 안지랑로7길 84(대명동)							
2022년	03월	28일	주소변경	2022년	04월	01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양현승 710630-*****							
2021년	03월	30일	취임	2021년	04월	06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황문양 820225-*****							
2021년	03월	30일	취임	2021년	04월	06일	등기

**종류주식의 내용**  
에이중우선주식

① 회사는 이천만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에이중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에이중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있다.

② 회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익을 배당한다.

1. 최우선적으로 에이중 우선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의 연 2.7%의 비율로 해당 사업연도의 주식 보유기간에 대하여 일한 계산한 금액을 배당한다.
2. 전 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재원으로, 보통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의 연 2.7%의 비율로 해당 사업연도의 주식 보유기간에 대하여 일한 계산한 금액을 배당한다.
3. 전 호에 따라 배당 후 남은 배당재원으로, 에이중 우선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에이중 우선주식의 투자에 다른 당해 배당사까지의 내부수익률[일정한 시점까지 해당 주식의 주주가 회사



등기번호	592991
------	--------

로부터 수령한 이익배당금(배당 결의시에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특정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결의된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수령시기를 계산함) 및 잔여재산 분배금액을 출자금 납부일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합한 값이 출자금과 같아지도록 할인하는 이자율을 의미하고 이하 같음]을 3.08%이 되도록 만드는 금액(명확히 하면, 에이중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을 포함하는 것이 고, 이하 같음)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

4. 전 호에 따라 배당 후 남은 배당재원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

③ 어느 사업연도의 에이중 우선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제2항에서 정한 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배당시에 우선적으로 배당 한다.

④ 회사 청산시 다음 순서로 잔여재산을 현금으로 분배한다.

1. 최우선으로, 에이중 우선주식에 대하여 에이중 우선주식의 주금납입일로부터 잔여재산 분 배일까지의 내부수익률을 연 3.08%가 되도록 만드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2. 전 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으로, 회사가 신축한 공동주택 및 그 부속시설(이하 “대상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한 총 가격이 2017. 5. 30.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최된 기금투자심의위원회가 승인한 대상부동산의 시세를 초과한 경우, 그러한 초과로 인하여 회사 가 얻은 처분이익(매각가격에서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대상부동산의 취득가격과 매각에 소요 된 비용을 공제한 이익을 의미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에이중 우선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

3. 전 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으로, 보통주식에 분배한다.  
2017년 08월 12일 설정      2017년 08월 16일 등기

① 회사는 이천만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에이중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에이중 우 선주식은 의결권이 있다.

② 회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익을 배당한다.

1. 최우선적으로 에이중 우선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의 연 2.7%의 비율로 해당 사업연도의 주식 보유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배당한다.

2. 전 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재원으로, 보통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의 연 2.7%의 비율 로 해당 사업연도의 주식 보유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배당한다.

3. 전 호에 따라 배당 후 남은 배당재원으로, 에이중 우선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에이중 우선 주식의 투자에 따른 당해 배당시까지의 내부수익률[일정한 시점까지 해당 주식의 주주가 회사 로부터 수령한 이익배당금(배당 결의시에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특정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결의된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수령시기를 계산함) 및 잔여재산 분배금액을 출자금 납부일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합한 값이 출자금과 같아지도록 할인하는 이자율을 의미하고 이하 같음]을 3.08%이 되도록 만드는 금액(명확히 하면, 에이중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을 포함하는 것이 고, 이하 같음)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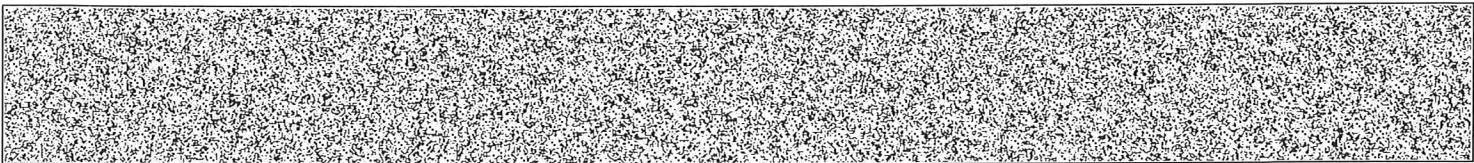
4. 전 호에 따라 배당 후 남은 배당재원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

③ 어느 사업연도의 에이중 우선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제2항에서 정한 배당률에 미치지 못 한 경우에는 그러한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배당시에 우선적으로 배당 한다.

④ 회사 청산시 다음 순서로 잔여재산을 현금으로 분배한다.

1. 최우선으로, 에이중 우선주식에 대하여 에이중 우선주식의 주금납입일로부터 잔여재산 분 배일까지의 내부수익률을 연 3.08%가 되도록 만드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2. 전 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으로, 회사가 신축한 공동주택 및 그 부속시설(이하



등기번호	592991
------	--------

“대상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한 총 가격이 2017. 5. 30.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최된 기금투자심의위원회가 승인한 대상부동산의 시세를 초과한 경우, 그러한 초과로 인하여 회사가 얻은 처분이익(매각가격에서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대상부동산의 취득가격과 매각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이익을 의미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에이중 우선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

3. 전 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으로, 보통주식에 분배한다.  
2017년 08월 21일 개정 2017년 08월 24일 등기

① 회사는 이천만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에이중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에이중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있다.

② 회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익을 배당한다.

1. 최우선적으로 에이중 우선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의 연 3.08%의 비율로 해당 사업연도의 주식 보유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배당한다.
2. 전 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재원으로, 보통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의 연 3.08%의 비율로 해당 사업연도의 주식 보유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배당한다.
3. 전 호에 따라 배당 후 남은 배당재원으로, 에이중 우선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에이중 우선주식의 투자에 따른 당해 배당시까지의 내부수익률[일정한 시점까지 해당 주식의 주주가 회사로부터 수령한 이익배당금(배당 결의시에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특정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결의된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수령시기를 계산함) 및 잔여재산 분배금액을 출자금 납부일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합한 값이 출자금과 같아지도록 할인하는 이자율을 의미하고 이하 같음]을 3.08%이 되도록 만드는 금액(명확히 하면, 에이중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을 포함하는 것이 고, 이하 같음)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
4. 전 호에 따라 배당 후 남은 배당재원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

③ 어느 사업연도의 에이중 우선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제2항에서 정한 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배당시에 우선적으로 배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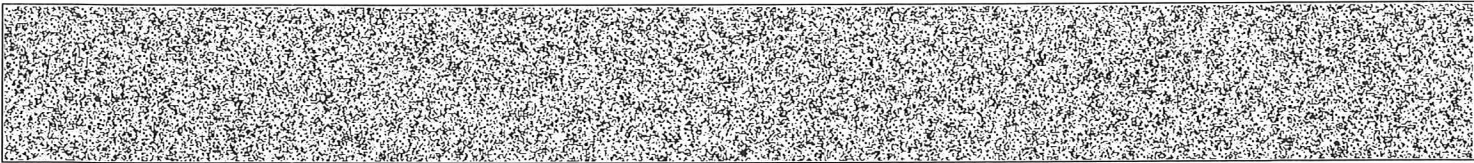
④ 회사 청산시 다음 순서로 잔여재산을 현금으로 분배한다.

1. 최우선으로, 에이중 우선주식에 대하여 에이중 우선주식의 주금납입일로부터 잔여재산 분배일까지의 내부수익률을 연 3.08%가 되도록 만드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2. 전 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으로, 회사가 신축한 공동주택 및 그 부속시설(이하 “대상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한 총 가격이 2017. 12. 18.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최된 기금투자심의위원회가 승인한 대상부동산의 시세를 초과한 경우, 그러한 초과로 인하여 회사가 얻은 처분이익(매각가격에서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대상부동산의 취득가격과 매각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이익을 의미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에이중 우선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
3. 전 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으로, 보통주식에 분배한다.  
2017년 12월 21일 변경 2018년 01월 19일 등기

**기 타 사 항**

1.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그 존립기간의 만료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등기번호	592991
------	--------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의 취소 7. 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가 거부된 경우 8.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는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그 존립기간의 만료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7. 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8.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2017년 08월 04일 변경      2017년 08월 16일 등기
--

회사성립연월일	2015년 12월 28일
---------	---------------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15년 12월 28일 등기
-------------------------	------------------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23년 04월 0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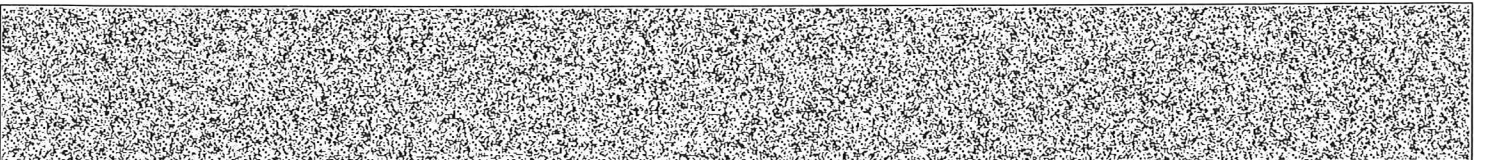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130005005101030024100322001291902E9N501Z1A1Y0I1M1 1      발급확인번호 9912-AAWU-WWCC      발행일:2023/04/03